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10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강을석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6호 신설)

라.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음.

2 세부내용 검토

가.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¹⁾에 따른

- 1)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 조례안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책임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금번 조례안 안제5조제2항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실태와 개선에 필요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 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집행부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안 제5조제2항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제6조(실태조사) ① ---- 제5조 -----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학교용지 용어 신설 등(안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6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5. (생략) <신설>	6.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 조례안은 정의 규정인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내용을 가진 바, 통학로 설치시 활용하는 토지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²⁾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생략-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생략-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사업’³⁾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의의가 있하겠음.
- 그러나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관내 소재한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청장이 교육청 등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사업(안 제4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5. (생략) <신설>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위 조례안의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바닥형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

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024호(2018.7.30.)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가능구간 실태 조사 협조요청”

조장치’와 ‘보행신호 대기공간의 바닥에 보행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법률용어 통일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려하여 ‘보행신호 음성 보조장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용어를 제안하여 정의규정에서 밝히는 등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행신호 음성 및 바닥형 보조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 신호시 음성과 바닥 보행 신호로 횡단을 안내함⁴⁾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인 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서울시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 중 667개⁵⁾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함.
-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⁶⁾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건수는 68건인 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횡단중 사고 비율은 3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4) 보행신호에 따른 음향신호 표출내용(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 17.3.)

보행신호	상 황	음향신호
① 적색	무단횡단 감지 시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녹색	횡단 감지 시	「좌우를 살 핀 후 건너가십시오」
③ 녹색 점멸	횡단 감지시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5)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1,7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중 667개 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함.(’ 22년 9월)

6)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

연도	보호 구역 (개소)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부상자 수 (명)	사고유형(건수)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 자리 구역	보도 통행중	기타
2017	1,733	81	1	85	45	3	1	1	31
2018	1,730	77	1	77	43	7	2	4	21
2019	1,721	114	2	115	53	8	2	2	49
2020	1,694	65	-	70	19	1	2	1	42
2021	1,735	68	1	83	26	5	-	2	35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 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통학로상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및 바닥형 보조장치” 설치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행신호 음성 및 바닥형 보조장치 설치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해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우리 구 실적은 어떤가
- 답 변 :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수립함. 그 내용은 지금 지역 내에 맞춤형 교통안전복지실현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체계 부분, 도로교통 부분, 운수산업 부분, 교통문화 선진화 부분 이렇게 해서 4개 부분 12개 추진과제로 해서 하는 사항임.
- 질 의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세대 어린이 통학시간 내 공사를 제한해야 하지 않나
- 답 변 :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 차량 이동 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음. 어린이 통학로 현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요구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 금지 조항 아님

7. 토론 요지

- 규정을 분명히 하고자 계획 관련 항목 보조장치 관련 호를 구분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246호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수립 의무 계획의 규정을 분명히 하고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조문의 항을 구분함
- 법률용어 통일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려하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를 규정한 호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관련 호를 구분함

2. 수정내용

- 항을 구분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 호를 구분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제3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 중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交通安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사업) ----- ----- -----.	(개정안과 같음)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안과 같음)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交通安全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3.·4. (생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u><신 설></u> 5. (생 략) <u>제5조(실태조사)</u> 구청장은 <u>제4조</u>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u>제6조 · 제7조</u> (생 략)	<u>6.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u>7. (현행 제5호와 같음)</u> <u>제6조(실태조사) ①</u> ----- <u>제5조</u>----- ----- ----- ----- ----- --.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7조 · 제8조</u> (현행 제6조 및 제7조	<u>5. · 6. (개정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u> <u>7. (개정안 제6호와 같음)</u> <u>8. (개정안 제7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제8조 · 제9조 (생 략)	와 같음)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 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 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 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 조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한 통학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7.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제6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u>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 설>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u>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u>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 <u>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u>지역교통안전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u>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 ----- -----.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u>관한 사업</u>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u>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3. <u>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u>
--	--

<u><신 설></u> 3.·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u>제5조(실태조사)</u> 구청장은 <u>제4조</u>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u>제6조·제7조</u> (생 략) <u><신 설></u>	<u>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u>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u> <u>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u>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u> <u>같음)</u> <u>7.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u> <u>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u> <u>업</u> <u>8. (현행 제5호와 같음)</u> <u>제6조(실태조사) ①</u> ---- <u>제5조-</u> ----- ----- ----- ----- -----.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u> <u>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u> <u>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u> <u>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u> <u>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7조·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u> <u>조와 같음)</u> <u>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u> <u>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u> <u>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u> <u>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u> <u>을 위</u>
---	--

<u>제8조</u> · <u>제9조</u> (생략)	<u>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u> ② <u>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u> <u>제10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강을석·김형대·전인수·
이성수·박다미·안지연·
복진경·이동호·한윤수·
노애자 의원(이상10인)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안 제4조 신설)
-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6호 신설)
- 라.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한 통학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6.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u>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u> 2. <u>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u> 3. <u>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u> 4. <u>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u>

<u>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u>」 제8조에 따른 <u>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2. 「<u>도로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u><신 설></u> 3. 4. (생략)	<u>입제한에 관한 사항</u> 6. <u>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 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 <u>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 -----. 1. 「<u>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u>」 제7조에 따른 <u>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2. 「<u>도로교통법</u>」 제3조에 따른 <u>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3. <u>보행신호등 보조장치(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u>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	--

<신 설>

5. (생 략)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 · 제7조 (생 략)

<신 설>

같음)

6.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제5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

<u>제8조</u> · <u>제9조</u> (생략)	<u>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u> <u>제10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